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	**보도자료**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2012년 11월 23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자료문의 : 소프트웨어산업과장 김도균(02-2110-5121), 사무관 전용옥(4729) 사무관 이경민(5125)		

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법률 본격 시행

- SW기술자 관리체계 개선 : SW기술자 등급제 폐지 등
- 공공SW사업 발주관리 투명성 제고 : SW사업 저장소 구축 등
- 공공SW사업에의 중소기업 참여 확대 : 고시 제정
- 공공발주시장 모니터링 등 관리감독 강화

□ 지식경제부(장관: 홍석우)는 금년 5.23일 개정 공포된 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·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여 '12.11.24(토)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힘

○ 이는 기존 대기업 위주의 SW 시장질서를 전문·중소기업 위주로 전환하고, 선순환적인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「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전략」('11.10, 비상경제대책회의)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

□ 이번에 시행되는 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령」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,

가. SW기술인력 관리체계 개선

○ SW기술자의 창의성·실무경험·능력 위주의 인력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'SW기술자 등급제'를 폐지하고, SW기술자의 인정기준을 정함 (시행령 제1조의2)

○ SW기술자 등급제 폐지에 따라 경력관리를 위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을 정비하고, 경력신고 수수료를 인하*하여 부담 완화 (시행규칙 제13조)

* SW기술자의 최초 경력등록(30천원 → 25천원), SW기술자의 경력관리(10천원 → 5천원), SW기술자 경력증명서 발급(5천원 → 2천원)

○ SW전문인력의 체계적·집중적 양성을 위해 전문기관 지정요건 및 공개모집 등의 지정절차를 개선 (시행령 제8조, 시행규칙 제3조의2)

나. 공공SW사업 발주관리 투명성 제고

○ 공공 SW사업의 품질향상과 사업관리 효율화를 위해 공공 SW사업 요구사항 명확화 기준* 도입 (법 제20조제3항, '13.1.1일 시행)

* '09년부터 '11년까지 수행한 시범적용사업(15건)을 통해 마련한 '요구사항 분석·적용 기준'을 「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(고시)」에 반영 예정

○ 국가기관등이 발주한 SW사업 정보를 수집·분석하여, 국가기관 등의 사업계획 수립 및 원가계산 등에 활용토록 이를 제공해 주는 'SW사업 저장소' 구축체계 마련 (법 제22조, 시행령 제16조의2)

다. 공공SW사업에의 중소기업 참여 확대

○ 기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유를 축소하여 이를 법에서 규정*함으로써 중소SW사업자의 공공시장 참여를 확대 (법 제24조의2제2항)

* ①대기업이 구축한 SW사업의 유지·보수('14.12월까지 예외 인정), ②SW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재발주하는 사업(조달청을 통한 발주사업에 한함), ③국방·외교·치안·전력(電力) 또는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

○ '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' 고시 제정

*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의 참여제한은 법 제24조의2제3항 시행일('13.1.1) 이후부터 공고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

라. 공공발주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

○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SW사업의 관련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, 부적절한 경우에는 이를 개선 권고하는 등 관리·감독기능을 강화 (법 제24조의4, 시행령 제17조의8)

○ SW유통촉진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SW품질성능 비교평가외에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SW기술 및 제품정보 분석, 품질검증·기술지원, 유통촉진을 위한 종합관리체계 구축·운영 등의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 (시행령 제12조의2)

○ 이외에도, SW품질인증, SW프로세스인증 등의 지정·취소절차 규정 정비,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

□ 지식경제부는 개정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본격 시행으로 “국내 SW산업의 공생발전 기틀을 마련하고, 공공시장에서부터 선진SW 발주관리기법 도입, 전문SW기업 육성 기반조성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것”으로 기대하고 있음

○ 또한, 새로 도입되는 법·제도가 실효적으로 준수되기 위해서는 발주기관 및 SW산업계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,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는 발주관리 교육 확대, 상시 모니터링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